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585 |
|----------|-------|

발의연월일 : 2018. 12. 18.

발의자 : 이철희 · 이종걸 · 노웅래

백재현 · 김성수 · 최재성

기동민 · 윤소하 · 심상정

민병두 · 금태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담고 있는 법률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법률이 부재함.

따라서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및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선정, 협약 체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평가·변경 및 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8조).
-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2조).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

에 소속된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포함한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24조).

- 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제도의 운영·개선 및 개선의 체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학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30조).
- 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중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무형의 성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 다.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8.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란 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고유의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수행·관리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 활동”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연구지

원, 이 법에 따른 평가단·위원회 등에 위촉되어 수행하는 활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2장(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외한다)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국·공립연구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기관별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4.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지원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보안·비밀로 분류되는 국방 분야의 사업
3.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을 도모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5.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정보를 공개하여 개방형 혁신의 확산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할 것

7.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관하여 감사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할 것

8.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것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 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권리화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4. 연구책임자인 경우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제8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연구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지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과제인 경우

2. 외국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시행계획 등의 예고,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단체 및 연구자의 참여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협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3. 이 법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개발 목표·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보고 또는 통보를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변경·해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 실시하는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 변경, 중단, 연구개발비의 감액·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개선·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평가, 보고 및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성격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의 계상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년마다 정하여 고시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간접비의 계상 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비목 또는 하위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계상한도, 인정·불인정 기준 및 증명자료 등
2.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사용, 보고,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제9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이 조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평가대상자 및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시기·방법 및 절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형태, 참여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권리화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 및 공동 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

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연구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 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 정보 공개, 공동 활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또는 정부

납부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사용·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증명자료 등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법인의 휴·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등 특허 관련 정보

5.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자격관리 등 연구개발정보의 검

증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보안과제의 세부 분류 기준, 보안 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지정 해제, 대행 업무의 범위,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평가, 전문기관 지정·지정해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제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연구지원 체제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과 조직을 포함한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각 연구지원 업무별 연구지원인력 및 전담 조직과 연구자 간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연구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구축, 연구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지원 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 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 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집행·관리 실태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 체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 체계 평가 결과를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 기준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연구지원 체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기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국가연구개발 제도의 혁신

제27조(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 안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제도(이하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관계 법령등의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및 관계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영, 이 법 및 관계 법령등의 해석에 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개선) ①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점검·평가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조사·점검·평가, 제안의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영 실태 조사·점검·평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개선 제안 및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 관련 시책에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도개선 권고 대상, 권고 방법 및 절차, 권고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조치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성과 등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2. 제1호 외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또는 수행하는 행위
 3.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제16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등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비밀사항을 누설·유출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 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 제3항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제1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정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재사유에 따라 둘 이상의 제재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10년 이내의 참여제한
2.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의 부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와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및 연구개발비의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제재사유의 중대성·의도성 및 상습성,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제재사유별 제재조치 기준 및 범위, 제재조치의 가중·감

경,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조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제재조치 평가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연구자권익보호 및 부정방지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의 내용을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재조치 평가단과 연구자 권익보호 및 부정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재조치의 검토 절차 및 방법, 재검토, 통보,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재의 사후관리) ①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에 대한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

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의 손해(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추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파견 나온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행시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33조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 또는 연구자 권익보호 및 부정방지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3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0조(비밀유지)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

1. 한국연구재단
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한국임업진흥원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제6조(제재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7조(참여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6

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